

의안번호	2125716
의 퇴 인	박대출 의원
회 답 일	2023. 12. 6.
추 계 번 호	23F495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자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
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8조의4 (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신설)	○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취득·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- (감면내용) 취득세·재산세의 35% 감면 - (적용기한) 2025년 12월 31일	
2	안 제78조의5 (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)	○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- (대상사업) 항공우주산업,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- (감면내용)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 - (감면한도) ① + ② ① 투자누계액의 5% ② min(상시근로자×100만원, 투자누계액의 2%) - (적용기한) 2027년 12월 31일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8조의4 (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신설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8조의5 (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가 취득·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,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른 경우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동 개정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(의안번호 2125712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, 현 시점에 근거법률 및 관련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사업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움
 - 관련 법률이 의결되더라도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선정 및 사업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 - 따라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가 향후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 및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규모 및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정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